
2024년도 자체평가계획

2024. 7.



I. 개요

□ '24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 '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선정·평가
 - 정부 국정운영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성과 견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과제 선정
 -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 신규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제개선'과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정책성과 부분의 비율을 60%로 설정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국정철학,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과달성도 및 정책효과 평가
 - 정책형성 및 집행 단계에서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

□ 수립 경과

- 2024년 법제처 자체평가계획 초안 마련(3. 8.)
-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자문 등 사전검토 실시(3. 13.~24.)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상정·심의(3. 25.)
- 2024년 법제처 자체평가계획(안) 마련, 국조실 제출(3. 29.)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분야	경력	비고
내부	최영찬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성과관리총괄		
	김진	법제정책국	국장	법제정책총괄		
	박종구	법제지원국	국장	법제지원총괄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실	정책관	법제조정총괄		
외부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위원장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등	
	김주인	김주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김종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등	
	김해영	법무법인 우먼	변호사	법학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 등	
	김혜영	대구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정보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한국정책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부원장	정보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장 등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법학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 등	
	신원부	화성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행정학	경찰청 자체평가위원 등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법학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	
	조현욱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법학	법제처 법제편집위원 등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법조인	연구원	소계	
8명	3명	3명	14명	4명
(57.1%)	(21.4%)	(21.4%)	100%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법적근거: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법제처 훈령 제334호)
- 주요 기능(「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 연도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 자체평가결과의 심의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
 -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의견 제시
- 운영 방법(「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 (전체회의)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분야별 소위를 구성,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자문하고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종합평가 실시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주요정책 1소위	주요정책 분야 일부	박균성	김근세, 김해영, 손현, 최철호
			기획조정관, 법제지원국장
주요정책 2소위	주요정책 분야 일부	김종권	김수연, 김주인, 이국운, 조현욱
			법제정책국장, 법제조정정책관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조직, 인사, 정보화	기획조정관	김해영, 문명재, 박원재, 신원부
재정사업 특별소위	재정사업	박균성	김주인, 손현, 최철호
			기획조정관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자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오은하(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2
		장일수(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044-200-6543
		유가영(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44
	재정사업 자율평가	백승준(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47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원팀	1소위 관리과제 평가 지원	김진주(법제정책총괄과 서기관)	044-200-6562
		임정은(법제지원총괄과 사무관)	044-200-6833
		손은주(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기관)	044-200-6803
		송하정(자치법제지원과 서기관)	044-200-6753
		이동진(자치법규입안지원과 사무관)	044-200-6793
		정지윤(법령정비과 서기관)	044-200-6577
		김경수(법제지원총괄과 사무관)	044-200-6942
		고주석(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서기관)	044-200-6741
	2소위 관리과제 평가 지원	유정현(법령정비과 사무관)	044-200-6574
		박의준(법령검토지원팀 사무관)	044-200-6535
		진성훈(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044-200-6711
		하선우(법령데이터혁신팀 사무관)	044-200-6784
		이의종(법제정보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783
		유수연(법령용어순화팀 사무관)	044-200-6855
		유선열(법제교육과 서기관)	044-200-6768
		이일(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826
		강형석(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827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원팀	행정 관리역량 평가 지원	송은희(운영지원과 사무관)	044-200-6522
		고새로미(운영지원과 서기관)	044-200-6529
		이근호(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54
		윤성윤(법제정보담당관실 주무관)	044-200-6762
		하선우(법령데이터혁신팀 사무관)	044-200-6784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지원 총괄팀) 자체평가계획 수립,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환류 실적 확인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 (분과별 평가지원팀) 관리과제 이행실적 자체 점검 및 추진실적 작성 등 평가업무지원

III.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대상: 총 24개 국·과(팀) 중 18개 국·과(팀), 총 19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 부서	관리과제	성과지표	'24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법제정책 총괄과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① 주요 정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 지수	26회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 법령의 입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추진현황 점검 결과,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을 차관회의 등 부처 간 협의체에 보고한 횟수
		② 하위법령 제때마련율	100%	(제때 마련된 하위법령 건수 /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 건수)×100 * 제때마련일 30일 전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수하지 않은 법령 제외
		③ 통합입법에고시스템 제출의견 처리율	94.5%	연도별 월평균 의견처리율=(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법령안 건수 / 입법예고 제출의견 전체 법령안 건수)×100
법제지원 총괄과	2. 정책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① 법령입안지원 실적	95점	(유선회신 건수)×0.1+(서면회신 건수)×0.4+(대면상담 건수)×0.4
		② 법령입안지원 만족도	100%	법령입안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및 ‘만족’ 응답 수 / 전체 응답 수)×100
법제조정 정책관실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① 발의 전 법률안 예비검토 실적	635점	검토건당[i)기본 3점, ii)입안상담 1점]+난이도(1~2점)+중요도(1~2점)+검토활용(1점)
		② 발의된 법률안 검토 실적	1,182점	검토건당[i)기본 3점, ii)중요 쟁점 검토 보고 10점, iii)법안 상담 1점]+난이도(1~2점)+중요도(1~2점)+검토활용(1점)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견 조정·대응 기능 강화	① 국회 입법상황 모니터링 실적	718건	협의·확인사항 통지(건수)+법안 상황보고(건수)
		②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실적	542점	협의회 상정 안건당[i)서면 3점, ii)대면 4점]+중요도(0.5~1점)+난이도(1~3점)+조정성사(2점)
자치법제 지원과, 법제지원 총괄과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①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과제 확정 건수	52건	발굴과제 중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과제로 확정된 건수
		② 자치법규 의견제시 만족도	92%	(만족도 조사에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 / 응답자 수)×100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6.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① 자치법규 입안지원 실적	712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필수위임조례 사전 검토 및 입법모델 제공 등 위임조례 관리, 참고 자치법규안 자료 등의 자치법규 입안지원 실적
		② 밀착형 입법컨설팅 횟수	20회	밀착형 입법컨설팅 실시 횟수

담당 부서	관리과제	성과지표	'24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법령 정비과	7.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①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확정 건수	150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과제 중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 후 정비과제로 확정된 건수
법제지원 총괄과	8.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① 규제 사전검토 대안 제시율	45.6%	(대안 제시 건수 / 사전검토 의견 회신 건수)×100
법제개선 조정과	9.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① 기업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개선 과제 확정 건수	40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과제 중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 후 개선과제로 확정된 건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10.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제개선	① 신산업·신기술 관련 입법지원 건수	30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대상 법령 입법지원 건수
		②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법령 정비과 (법제국)	11.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① 국민참여심사 실시 횟수	114회	국민참여심사 실시 횟수
법령검토 지원팀	12. 신속·정확한 법령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① 법령검토지원의 정책기여도	94.8%	'법령검토지원 내용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 '매우 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한 수 / 전체 응답 수)×100
		②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횟수	20회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실시 횟수
법령 해석국	13.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 집행 지원	① 적극해석 건수	56건	적극해석 유형별로 파악 1. 규제 등의 침익요건의 확대 적용을 막은 사례 2. 허가 등의 수익요건의 축소 해석을 막은 사례 3.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②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인으로 국민이 참여한 건수	50건	민원인이 해석 요청한 안건 중 민원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위원회에 관계인으로 참여한 안건 수
법령데이 터혁신팀	14.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① 질의답변(FAQ) 데이터셋 구축 건수	500건	연간 질의답변(FAQ) 데이터셋 구축 건수 총합
		② 법령정보 공동활용기관 증가 수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신규 기관 증가 수
법제정보 담당관실	15.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85점	설문조사 응답자의 활용도 점수의 합 / 전체 응답자 수 (항목별 가중치) 도움이 됨: 100점, 조금 도움이 됨: 80점, 보통: 60점, 도움이 되지 않음: 40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 20점
법령용어 순화팀	16.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① 법령 및 약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안 마련 건수	586건	현행 법령,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준설명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한 건수
		② 법령정보로 제공될 그림·체계도·표 등 개발 완료한 시각 콘텐츠 건수	484건	3개 분야 40개 법령 속 어려운 법 조문의 내용을 그림·체계도·표 등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건수

담당 부서	관리과제	성과지표	'24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법제 교육과	17. 공무원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①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수	77,521명	연간 법제교육 과정별 인원수의 합계 (집합교육 수료 인원수+사이버교육 수료 인원수)
		②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	93.1점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 점수의 합 / 전체 응답자 수
법제교류 협력 담당관실	18.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① 맞춤형 해외 법령 번역 제공 실적	474만자	연간 법령 번역 결과물의 한글 글자 수 총합
법제교류 협력 담당관, 법령데이터혁신팀	19.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① 외국법제기관과의 소통률	80%	당해 연도 소통한 외국법제기관(정부기관) 수 / 법제처와 MOU 등을 체결한 외국법제기관(정부기관) 수

※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평가 제외

2. 재정사업 부문

- '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평가지침 변경으로 30억원 이상 세부사업(정보화 사업은 10억원 이상)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법제처는 1개 세부사업(법제업무정보화추진)이 평가대상으로 상대평가 미실시(절대평가 후 “보통”으로 처리)

<'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개편 내역>

구분	기존	개편
변경사항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정보화 사업은 5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세부사업 (정보화 사업은 10억원 이상)
평가대상	4개 단위사업 · 법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총괄관리 · 법제업무정보화지원 · 법제전문성향상	⇒ 1개 세부사업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인사, 조직, 정보화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 및 생산성 향상 노력

구분	평가주관기관	담당부서
조직	행정안전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인사	인사혁신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정보화	행정안전부	법제정보담당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 평가주관기관은 평가기준을 만들고, 전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종합·관리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정책활동 단계*에 따라 3개 항목·가감점 등 10개 지표로 평가

* 정책활동 단계: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정책형성 (22점)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정책목표 및 수단의 구체성·적절성	10점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분석,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12점
정책집행 (18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	추진일정의 구체성·적절성 및 추진일정 준수 여부	4점
	상황변화 대응성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여부	6점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유관기관·국민·이해관계자와의 연계·소통 노력	8점
정책성과 (60점)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난이도,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35점
	정책효과 발생 여부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25점
가점 (+5점)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기여도	+3점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핵심 민생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1점
	협업과제 추진성과	‘협업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1점

※ 상세 내용은 [붙임 1]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참조

○ 현장 의견수렴 계획을 구체화*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고려,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항목 배점 확대(7점→8점)

* 「20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분기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 민생 현장 의견수렴 계획 반영
- 운영실태 점검 시 ‘현장의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반영

- 정책성과 및 효과 관련 항목의 배점을 60%로 설정
- 적극성이 인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우대
 -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❶성과지표의 대표성 정성평가
 - 결과지표 여부,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❷성과지표의 난이도 정성평가('23년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 ①결과지표, ②부처 협업 필요성, ③현장 의견수렴 또는 방문형(현장형), ④다수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⑤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관장 활동 필요성 등
 - '24년 목표치가 과거 3년 실적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전년도 실적의 110% 이상일 경우 ❸성과지표의 적극성 인정, 담당 부서 의견수렴 및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표별 적극성 확정
 - * 실적이 증가 추세인 성과지표: 목표치가 3년간 평균치의 120% 이상이라도, 전년도 실적 이하인 경우 적극성 ‘상’ 설정 불가('23년 자체평가위원 제도개선 의견)
 - * 전년도 목표달성에 실패한 과제: 전년도 목표를 유지한 경우에도 ‘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인정('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 ‘성과지표 달성도’ 관련 가감점 부여
 -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 적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가점(1점) 부여 가능('21년 자체평가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 연말 성과지표 달성도가 200%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1점 이내) 가능
 - 지표별 점수에 성과의 질에 따라 가감점(1점 이내) 가능
 - 지표 특성상 초과달성(목표치의 120% 이상)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점(2점 이내) 가능
 - * (예) 하위법령 제때마련율('24년 목표치 100%)의 경우 달성 가능한 실적이 최대 100%로 초과달성 불가능

- 정책성과 평가 시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기대효과 항목을 삭제
· 통합하고 **종합효과를 평가**(’23년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정책성과 평가 시 ’23년도 자체평가 결과 및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평가, 자체평가 결과 환류 및 실질적 자문 기능 강화
- 가감점 지표의 경우, 과제별 추진 성과가 우수한 경우 가점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24년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핵심 민생과제’·‘협업과제’ 선정 및 자체평가 시 우대

* 「20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성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방안 마련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협업과제**’ 부문을 신설해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협업 성과관리 추진, 기관 내 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권장

- 핵심 민생과제 및 부서 간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가점(1점 이내) 부여**

* (핵심 민생과제)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2.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 (협업과제)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2.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2. 재정사업 부문 / 행정관리역량 부문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세부 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지표, 배점, 세부 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 [붙임 2]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항목, [붙임 3]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 참조

V.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4명),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실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종합평가 실시
- 행정관리역량·재정사업 부문은 인사, 조직, 정보화 및 재정 분야 담당 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특별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주요정책 1소위	주요정책 분야 (관리과제 1~10)	외부위원	외부(5), 내부(2)
주요정책 2소위	주요정책 분야 (관리과제 11~19)	외부위원	외부(5), 내부(2)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조직, 인사, 정보화	내부위원	외부(4), 내부(1)
재정사업 특별소위	재정사업	외부위원	외부(4), 내부(1)

□ 평가자료 검토방법

- 부서별 관리과제 설명회 개최
 - 주요정책 부문 평가대상 관리과제의 각 소관 부서에서 과제와 관련된 사업내용 및 2024년 성과 등을 간단하게 소개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심사 개최(서면)
 - (주요정책)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자료 확인·점검 및 사전점수 부여
 -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의 객관성·타당성을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에서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대면)

-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거쳐 주요 정책 부문 우수과제 및 미흡과제를 선정하고, 주요정책 부문·행정관리역량 부문 보완 필요사항 제시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 19개 관리과제를 7등급(매우우수 / 우수 / 다소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부진)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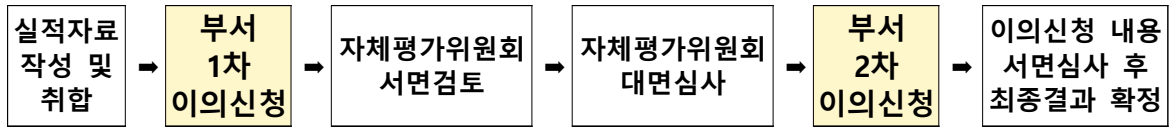
등급명	19개 관리과제(상위 누적 비율)
매우우수 / 1등급	1위(5%)
우수 / 2등급	2위, 3위(20%)
다소 우수 / 3등급	4위, 5위, 6위(35%)
보통 / 4등급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70%)
다소 미흡 / 5등급	14위, 15위, 16위(85%)
미흡 / 6등급	17위, 18위(95%)
부진 / 7등급	19위(100%)

□ 국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 평가 대상 관리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 과제별 내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리과제 소관 부서 이의신청 절차 실시
 - (1차) 추진실적 취합 후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해서 예상 점수 범위에 대한 1차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평가의 적절성 및 형평성 제고

- (2차) 자체평가위원회 대면심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오류 및 성과 제출 이후 발생한 객관적인 수치변경의 경우에 한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결정 및 최종결과 확정

<자체평가 절차>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 결과공개

- 평가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는 자체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주관부서)	주요 내용
○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등 확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	7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상반기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이행실적 점검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정	8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및 해당 내용 반영하여 자체평가계획 수정
○ 부서별 사업설명회 개최	12월 초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외부 자체평가위원 대상 관리과제 내용 및 성과 관련 보고
○ 자체평가 실시	'24년 12월~'25년 1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공개	'25년 3월	정평위 보고 후 홈페이지 게재 및 국회 상임위 보고

VI.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 중심의 행정 구현

- 평가 결과를 조직·개인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개인 성과급에도 연계

2. 평가 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평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과제 담당부서별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예산부문) '24년 평가 결과를 고려, 예산 및 사업규모 등 조정
- (조직부문)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여 기능 재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인력 재배치 등 정원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3.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성과평가, 포상 등) 활용계획

- (성과평가와의 연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BSC) 및 성과급과 연계
 - 부서장 및 부서원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개인평가 시 부서평가 실적 비율을 60%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리 유인 마련

< 법제처 BSC 계량평가 항목 >

4급 이상 (부서장) 및 5급 이하 (4·5급 포함)	성과지표 40%		자체평가 결과 60% (자체평가 결과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부서별 지표로 평가)
	공통지표 15%	부서별 지표 25%	

- **(포상)** 평가부문별 우수 실적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평가 담당자의 관심도 제고 및 동기부여 유인 제공
 - 주요정책 부문 우수과제 담당부서 및 전년도 대비 실적이 대폭 향상된 행정관리역량 부문 지표 담당부서 포상금 지급
- **(제도적 인센티브)** 직원 격려금 집행 대상 및 주요 직무급 선정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고려를 통해 관리과제 이행에 관한 조직 전체의 관심과 협력 유도

4. 평가결과 공유 · 확산 방안

- '24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공유하고,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 시 개선 · 보완 사항 반영을 독려('25년 초)

VI.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24년 4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평가지표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점)
측정 방법	○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5) - 관리과제의 정책목표가 ④ 전략목표 · 성과목표에 부합, ⑤ 정책수단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 ③ 정부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 ① ④, ⑤, ③ 세 가지 모두 충족: 5점 ② ④, ⑤, ③ 중 두 가지 충족: 4점 ③ ④, ⑤, ③ 중 한 가지 이하 충족: 2점 ④ ④, ⑤,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책수단의 적절성(5) ④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 적절한 정책수단을 포함, 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③ 관련 기구 · 예산 · 인력 · 법 · 공권력 등 실질적인 실행수단을 마련 ① ④, ⑤, ③ 세 가지 모두 충족: 5점 ② ④, ⑤, ③ 중 두 가지 충족: 4점 ③ ④, ⑤, ③ 중 한 가지 이하 충족: 2점 ④ ④, ⑤,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절성 여부 판단 - 관리과제의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여 상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 - 구체적인 정책목표 제시로 그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지 판단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인지 판단 ○ (정책수단 적절성) 실질적 정책수단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포함되었는지 판단(예를 들어 법률개정이 목표라면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강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관련 기구 · 예산 · 인력 · 법 · 공권력 등이 적기에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2점]
측정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현황·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효과분석 등을 충실히 실시했는지 여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및 사례 분석 충실성(3)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충실히 반영한 정도 ① 충실: 3점 / ② 보통: 2점 / ③ 부진: 0점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충실성(3)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충실히 반영한 정도 ① 충실: 3점 / ② 보통: 1점 / ③ 부진: 0점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충실성(6)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충실히 반영한 정도 ① 매우 충실: 6점 / ② 충실: 4점 / ③ 보통: 2점 / ④ 부진: 0점 * 의견수렴·협의 내용 반영사례가 실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충실 이상 평가 가능
측정기준 (착안사항)	○ (통계 및 사례 분석 충실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관리과제 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계 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실적 작성 시 통계 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 및 출처 명시 필요 ○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충실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관리과제 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SWOT 분석, PESTLE 분석,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PESTLE 분석: 정책대안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의견수렴 충실성)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의견수렴 또는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의견수렴·협의 내용 반영사례가 실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충실 이상 평가 가능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 (4점)
측정방법	○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추진일정에 ㉠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 추진일정이 충분히 적정한 수준(구체적,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① ㉠, ㉡ 모두 충족: 2점 ② ㉠, ㉡ 중 한 가지 충족: 1점 ③ ㉠, ㉡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 (추진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2) • 총 일정 대비 준수한 일정의 비율을 계산 ① 모든 일정 준수: 2점 ② 70% 이상 준수: 1점 ③ 70% 미만 준수: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추진일정의 적절성)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이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판단 ㉠ 의견수렴,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수행, 설문조사 등 필요한 일정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판단 ㉡ 세부 추진계획이 업무 절차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세부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에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의 충실성)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 준수 여부는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추진내용의 충실성 여부와 연계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일정 지연* 시 그 사유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일정 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변화(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팬데믹, 대북 관계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2. 상황변화 대응성 (6점)
측정방법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6) •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여건·상황변화 대처의 적시성, ㉢ 여건·상황변화 대처의 적절성 ①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6점 ②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4점 ③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4점 ④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2점 ⑤ ㉠, ㉡, ㉢ 모두 미이행: 0점 * 여건·상황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 판단 ① 충실히 수행: 6점, ② 일부 미흡: 4점, ③ 상당히 미흡: 0점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평가위원 재량으로 일정 점수 부여(4점 이내)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공공고객관리),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 포함 ㉡ 여건·상황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 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실, 당,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 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 여건·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정도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8점)
측정방법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실적 및 국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대상 현장방문, 세미나 개최, 자료제공, 홍보 등 소통 노력 정도 국민·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8) • ① 업무추진에 필수·상시적인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② 국민·관련기관과의 필수·상시적이지 않지만 수시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③ 국민·관련기관과의 협업실적 및 연계·협조체제 운영 ①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8점 ②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일부 내용 미흡: 6점 ③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 미흡: 5점 ④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5점 ⑤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일부 내용 미흡: 4점 ⑥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 미흡: 3점 ⑦ ①,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중 일부 미이행: 2점 ⑧ ①,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미이행: 0점 * 국민·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목표하는 정책성과를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창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협업체제를 실제로 구축하였는지 판단(예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 추진 등) ② 국민·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판단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세미나 등 회의체 상설화, 실제 회의 개최 여부, 지속적인 홍보 채널 구축 등 - 관련기관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개념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제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③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협조체제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판단 -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적 및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 홍보를 통해 서비스 및 사업 이용 실적 및 만족도가 향상된 경우 충족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3-1. 성과지표 달성도 (35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난이도, 목표치의 적극성 설정 정도 및 달성도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지표별 획득 점수의 평균 점수

성과지표의 대표성(5)

• 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판단

① 상: 5점 / ② 중: 3점 / ③ 하: 1점

성과지표의 난이도(10)

• ㉠ 결과지표, ㉡ 부처 협업 필요성, ㉢ 현장 의견수렴 또는 방문형(현장형), ㉣ 다수의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활동 필요성 등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3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10점 / ② 3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8점 / ③ 2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6점 / ④ 2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4점 / ⑤ 1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2점 / ⑥ 1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1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20)

적극성 \ 달성 여부	초과달성	달성	거의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높음	20	18	16	14	12
보통	18	16	14	12	10
낮음	16	14	12	10	0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제·개정: 초과달성, ②법률·시행령까지(법률만 목표인 경우 법률만) 제·개정: 달성, ③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 거의 달성

초과달성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초과하여 달성 (목표치 120% 이상)
달성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약간 초과 (목표치 100%~119% 달성)
거의달성	실적이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 경우 (목표치 90%~99% 달성)
일부달성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 (목표치 60%~89% 수준 달성)
미달성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지표 달성이 저조한 경우

• 3년간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전년도 실적의 110% 이상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목표치가 한계에 이르렀으나 핵심 기본업무에 관한 지표인 경우 실적 수준이나 추세치를 유지하면 '보통' / 신규지표인 경우 '보통'

* 실적이 증가 추세인 지표의 경우 목표치가 3년간 평균 실적의 120% 이상이라도, 전년도 실적 이하인 경우 '보통'

* 전년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과제의 경우 전년도 목표를 유지한 경우에도 '도전적 목표설정'으로 인정

• 가감점 항목(정성) * 원점수와 가감점을 합한 점수는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의 질에 따라 ±1점 이내 가감 가능

- 성과지표 적극성이 인정되는 경우 1점 이내 가점 가능

- 성과지표 달성도가 200% 이상인 경우 -1점 이내 감점 가능

- 성과지표 특성상 초과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점 이내 가점 가능

* (예시) 하위법령 제때마련율('24년 목표치 100%)의 경우 달성 가능한 실적이 최대 100%로 초과달성 불가능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
(착안사항)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점)
측정 방법	○ 해당 과제의 추진으로 인해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국정 기초 및 전략목표 등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기여 정도(15) * 계량 · 비계량 효과 종합,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없는 경우는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 ① 매우 뛰어남: 15점 / ② 뛰어남: 12점 / ③ 보통: 9점 / ④ 부진: 6점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개선 ·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추진 및 결과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10) •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 또는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부진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지적사항 ·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 보완 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였는지 ㉣ 개선사항이 결과로 연결되었는지 ① ㉠,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10점 ② ㉠,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8점 ③ ㉠,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7점 ④ ㉠,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4점 * 전년도 평가 결과가 없는 신규 관리과제의 경우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기여 정도(15)'를 25점 만점으로 환산
측정기준 (확인사항)	○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 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상위목표 달성 기여 여부 -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달성이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 등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지적사항 반영 여부(㉠, ㉡) -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전년도 미흡과제 및 올해 상반기 부진과제 특별관리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정량 확인 ○ 수립된 시행계획 등 준수 여부 및 개선사항 결과 연결 여부(㉢, ㉣)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 및 매월 실시하는 점검 결과 확인
평가근거	○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효과 발생 관련 계량적 · 비계량적 근거자료 ○ 언론 보도자료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관련 자료

평가지표		4-1.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3점)	
측정방법		○ 국정과제, 특정평가 대상 주요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등 주요 정부시책에 대한 기여도를 정성평가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가점 3점)	
	측정방법	구분	주요 정부시책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 국정철학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민간주도 혁신성장, 적극행정 등	
	* 주요 정부시책과 관련이 있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 3점 이내 가점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참고> 2024년 법제처 정부혁신 추진과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		
	1.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법령정비과	
	2.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집행 지원	법령해석총괄과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1.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2.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법령데이터혁신팀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지원총괄과	
	2.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자치법규입안지원과	
	3.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4. 알기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준설명서 만들기	법령용어순화팀	
	5.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협력·지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1. 지식행정 구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1. 지능형(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법령데이터혁신팀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개선	법령데이터혁신팀	
	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법령용어순화팀	
	4. 종이 없는 행정 구현(구비서류 제로화)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1. 청년 등 미래세대 민생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법령정비과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1.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제 분야 혁신 주도	미래법제혁신기획단		
2. 미래시대를 대비한 전담조직 신설 및 미래 이슈 관리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4-2.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1점)						
측정방법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의결 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한 성과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가점 1점) • 핵심 민생과제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효과성, 중요도·난이도 등을 계량적·비계량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평가 시 고려사항] <table data-bbox="371 712 1375 1171"> <tr> <td>계량적 성과</td><td>• 핵심 민생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r> <td>비계량적 성과</td><td>•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r> <td>부수적 효과</td><td>•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able> ※ 위 항목별 별도 배점 없음. 부서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핵심 민생과제의 성과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점수 부여	계량적 성과	• 핵심 민생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비계량적 성과	•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부수적 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계량적 성과	• 핵심 민생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비계량적 성과	•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부수적 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기존의 행정·정책 경험을 뛰어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 해결에 접근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 ○ 효과성 - 실질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정도를 평가 ○ 중요도·난이도 - 과제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준비하였는지 평가 -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비하여 핵심 민생과제를 얼마나 도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였는지 평가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4-3. 협업과제 추진성과 (+1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확인사항)	○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등 협업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신설한 ‘협업과제’ 부문 추진성과 부서 간 협업과제 추진성과(가점 1점) * 협업과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자원 절감, 갈등 해소,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측정 가능한 과제 [평가 시 고려사항] <table data-bbox="355 665 1406 1070"> <tr> <td data-bbox="355 665 483 869">협업 노력도</td><td data-bbox="483 665 1406 869"> • 협업 장애요인 극복이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노력 등 성과 창출 노력 • 통상적 수준을 넘어 현장과의 소통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적극적 노력 </td></tr> <tr> <td data-bbox="355 869 483 1070">협업 성과</td><td data-bbox="483 869 1406 1070"> •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문제해결 및 정책개선 ▲장애요인 극복 ▲시너지 창출 ▲효율성 제고 성과 등) • 행정비용 감축,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화 </td></tr> </table> ※ 항목별 별도 배점 없음. 부서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협업과제의 성과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점수 부여	협업 노력도	• 협업 장애요인 극복이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노력 등 성과 창출 노력 • 통상적 수준을 넘어 현장과의 소통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적극적 노력	협업 성과	•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문제해결 및 정책개선 ▲장애요인 극복 ▲시너지 창출 ▲효율성 제고 성과 등) • 행정비용 감축,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화
협업 노력도	• 협업 장애요인 극복이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노력 등 성과 창출 노력 • 통상적 수준을 넘어 현장과의 소통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적극적 노력				
협업 성과	•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문제해결 및 정책개선 ▲장애요인 극복 ▲시너지 창출 ▲효율성 제고 성과 등) • 행정비용 감축,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화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 평가항목별 배점

단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한가?	10
집행의 효율성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성과 달성도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0
성과 우수성	•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10
환류 및 개선노력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계		100
가감점	• 부처 상황에 따라 가감점 부여 가능 (예시) 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상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등	3점 이내

*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유지하되, 항목별 세부내역, 세부내역별 배점, 등급간 배점간격 등 평가세부 기준을 부처별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 가능

○ (평가방식) 세부사업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산정

* 법제처 평가대상은 1개 사업(법제업무정보화추진)으로 상대평가 미 실시
(절대평가하여 “보통”으로 처리)

분야	평가지표 (배점)	세부지표
조직 (30)	정부 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 (30)	① 조직진단 운영실적(8) - 자체 조직진단 추진 노력도(5) - 조직진단 자체 효율화 실적(3)
		② 통합활용정원 효율화 실적(8) - 인력운영 효율화 실적(4)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4)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실적(8) - 출석회의 및 정비 실적(5) - 위원구성의 지역 대표성(3)
		④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3) - 정부기능분류·조직정보 관리 수준 및 시스템 이용률(2) - 법령정보 등재의무 이행 정도(1)
		⑤ 조직혁신역량 강화 제도 운영 실적(3)
	감점 (-1)	⑥ 민간위탁 운영 관리 실적(-1)
인사 (35)	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 (32)	① 인재개발(7) -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4) - 상시학습 이수율(3)
		②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5)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4)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0)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6)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4)
		⑤ 공직문화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6)
	선택 (3)	⑥ 전문직위 지정 비율(3)
정보화 (35)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지원 (9)	① 국민 선제적·지능형 서비스 제공 노력(3)
		②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활용도(3)
		③ 웹사이트 UI/UX 관리 강화(3)
	디지털 행정 서비스 통합적 관리체계 강화 (13)	④ 정보자원관리 수준(3)
		⑤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4)
		⑥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2)
		⑦ 중복투자 예방 노력(3)
		⑧ 웹사이트 관리 우수성(1)
	사이버 안전 강화 (13)	⑨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4)
		⑩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3)
		⑪ 사이버 정보보안 수준(6)